

품질고급화장려금 운용 지침

1. 목 적

- 쇠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산업 경쟁력제고
-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, 고급육(1등급이상) 생산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-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계의 활성화 도모

3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 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구 분	'92 ~ '01년	2002년	2003년	2004년
사업량(천두)	199	119	62	17
계	31,544	19,612	10,400	4,092
사업비 보 조	25,235	17,651	9,360	4,092
(백만원) 지방비	6,309	1,961	1,040	-

5.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

사업개요

가. 지급대상

- '04.7.1일 이후 출하하는 거세우 중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여 A1·B1·A1·B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(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함)

■ 계통출하 방법

-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거세우를 도매시장·공판장 등에 출하하는 경우
- 시장·군수(자치구청장 포함)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거세우를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하는 경우

■ 생산자단체의 범위

- 지역 농·축협
- 시장·군수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

나. 지급장소 및 금액

- 포상금지급장소 : 지역축협 및 농협
- 지급기간 :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
- 지급금액(두당/천원) : (한우) A1*, B1*등급 : 300, A1, B1등급 : 200
(육우) A1*, B1*, A1, B1등급 : 100

다. 2004년 사업비(예산안) 내용

내용 별	사업 량	사업비 (백만원)					
		사업비 합계	예산액 (축산발전기금)				지방비
계	보조		융자	기타	기타		
품질고급화 장려금	16,700두	4,092	4,092	4,092	-	-	-

추진체계

가. 사업담당부서

- 농림부 : 축산경영과 (02-500-1905)

나. 사업시행기관

- 축산물등급판정소 (031-390-5500)

다. 사업시행

- 품질고급화장려금협조단체(이하 “협조단체”라 한다)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서식5·6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



- 1개 시·군 관내 생산자단체 : 시장·군수(자치구청장 포함)
- 2개이상 시·군에 걸쳐 있는 생산자단체 : 시·도지사
- 2개이상 시·도에 걸쳐 있는 생산자단체 : 축산물등급판정소

- 협조단체를 지정한 시·도, 시·군은 서식7에 의거 지정현황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통보
- 협조단체는 농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6을 참고하여 신규가입·탈퇴 농가를 지정기관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월단위로 통보
- 생산자단체는 계통출하시 서식1에 따라 출하축의 거세여부와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등급판정시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자체 보관·관리
-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 결과 품질고급화장려금 대상축 (A1⁺·B1⁺·A1·B1등급) 으로 판정된 경우 서식2의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를 출하자와 출하자 주소지의 지역축협 또는 지역농협에 통보
-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서식2 통보서의 발급일자 기준으로 2개월이내에 해당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우선 자체자금으로 신청 당일 지급
 - ※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
- 지역축협은 10일 간격으로 1개월이내에 서식3에 의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 요청
 - 장려금을 지급한 지역농협에서는 지역축협에 자금지급을 신청하고, 지역축협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여 장려금 수령 즉시 지역농협에 지급
-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개월이내에 송금

행정사항

가. 사후관리

- 시·도(시·군)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각각 협조단체로 지정한 생산자단체를 수시 점검하여 계통출하시 출하축의 거세 및 생산자 확인 등을 점검
 - ※ 계통출하시 거세 및 생산자 여부를 허위로 확인한 생산자단체는 협조단체에서 제외하고, 허위로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

나. 보고

- 시·도, 시·군,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시행 협조생산자단체 지정현황을 농림부에 연초 1회 보고하고, 변동사항 발생시 월단위로 보고하되, 시·군은 시·도를 통하여 보고(서식8)
- 장려금 지급결과 보고 :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월별지급 내역을 익월 10일 이내에 농림부에 보고

6.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

가. 사업추진기관

- 축산물등급판정소

나.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

- 지원대상 : 거세우 중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여 A1*·B1*·A1·B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(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함)
- 지원내용 : 2004년도 사업시행 내용 참조

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체계도

